

경쟁 정책의 국제화와 대응 방향

최재웅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

새해들어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지난 48년 1월 1일 발족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體制는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탄생시킨 WTO로 주도권을 넘겨 주었다. GATT 체제는 국제 기구라기 보다는 국제협약으로서의 실질적 한계때문에 그 동안 체제를逸脫하여 國別로 진행되어 온 광범위한 교역 규제는 물론, 80년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각종의 保護貿易措置가 남용될 지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특히 최근 교역에서 새로이 부상된 서비스, 지적 재산권 분야 등을 포괄할 수 없는 내용상의 한계마저 복합 작용된 결과, GATT의 기본 정신을 이어 받으면서도 이러한 한계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體制出帆을 가속화 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I. 경쟁 규범의 국제화 이슈

그동안 GATT體制下의 세계 경제는 무역자유화와 기업의 세계화 진전에 따라 상품을 비롯한 자본 등 生產要索의 국제간 이동을 꾸준히 촉진시켜 왔다. WTO

는 세계 경제의 이러한 추세를 향후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구심체 역할을 통해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경제적 국경이 무의미해지는 본격적인 개방화는 곧 양과 질적 측면의 競爭深化로 연결된다. 이는 그동안 주로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제한된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 위주의 시책이나 수출 확대를 위해 전략적 수단을 동원해 온 우리의 산업, 무역정책은 물론 국가 고유의 국내 정책으로만 인식되어 온 경쟁 정책에 있어서도 일대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 장벽이 크게 낮아지고 생산의 국제화에 따라 경쟁의 패러다임도 크게 변화하는 등 세계화 추세가 심화되면 될수록, 일국의 경쟁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이에 따른 국제간 마찰이 최근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92년 Davos 회의 당시 EC집행위원회 Leon Brittan 부위원장이 GATT 차원에서 새로운 협상 이슈의 하나로 '경쟁정책'을 거론한 바 있어 차기의 새로운 라운드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적 조화 이슈로 논

의되고 있는 경쟁 규범의 개관을 통해 국내 경쟁 정책의 향후 정책 전개 방향을 살펴본다.

II. 多者間 경쟁 규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기업의 制限的 거래 관행(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을 중심으로 多者間 또는 국제 기구 차원의 논의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온 바 있으나 통일된 규범화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1. GATT의 경쟁 정책

1957년 GATT는 '제한적 거래 관행'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은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에 착수하여 국제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간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한 바 있으나 제한적 거래 관행에 대한 개념 등이 명백히 정립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특히 체약국 정부의 국내법이나 자국내에서의 규제로 인한 외국 기업의 불리한 대우 문제 등에 대한 개선 규정은 반영되지 않은 채 국경에서 발생되는 무역장벽인 반덤핑, 相計關稅, 수출

보조금 규정만이 GATT의 경쟁 정책 규범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2. UN의 경쟁 정책

70년대 중반 이후 다국적 기업의 제한적 거래 관행이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무역, 투자, 기술 이전 분야에서 기존 체제를 재구성하고 개도국 중심의 공정하고도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결과 76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4차 총회를 계기로 협상에 착수한 후 80년 제35차 UN총회에서 '제한적 거래 관행 규제에 관한 다자간 원칙과 규범'을 채택하였다. 이 규범에 의거 각국은 이 문제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상대 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한적 거래 관행의 규제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술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각 회원들은 이같은 원칙과 규범에 따라 보고서를 매년 제출도록 되어 있으며 UNCTAD 역시 무역에 장애요소로 작용되는 제한적 거래 관행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특히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UNCTAD 내에 '제한적 거래 관행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두고 정보 수집 및 자문, 의견 교환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多者間 競争 政策에 관한 국제간 논의 내용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III. 圈域間 경쟁 규범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 진전에 따라 각 圈域別로 제한된 거래 관행과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 차원의 통일된 경쟁정책 규범 마련을 위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의 정회원 가입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이 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쟁정책논의 내용이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 OECD의 경쟁 정책

91년부터 OECD무역위원회와 경쟁법정책위원회(이하 경쟁위원회)는 경쟁 정책의 국제 규범 수립을 목적으로 활발한 연구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양위원회는 무역 정책과 경쟁 정책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분야를 공동 연구하고 있으며, 경쟁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국제적 기업 합병과 경쟁법의 수렴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OECD가 선정한 規範化 對象은 垂平協定, 유통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규제, 독점지배력의 남용, 垂直協定, 국제적 企業引受 및 合併, 덤핑과 반덤핑 조치, 기업간 국제 협정으로 7개 분야이다.

이를 통해 반경쟁적 관행과 법 규가 외국업체의 시장 참여를 봉

쇄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무역 조치의 사용이 국제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무역 정책과 경쟁 정책의 상호 보완적 관계 정립이 가능토록 GATT 차원의 지침 및 규칙에의 반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1) 수직 협정 : 수직 협정은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地域分割(exclusive territories)과 排他的去來(exclusive dealings) 등 비가격적 제한이 논의 초점이 되고 있다.

경쟁위원회는 수직 협정이 무역 증진 효과와 함께 무역 제한 효과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무역위원회는 비록 수입국의 국내 관점은 효율제고 측면에서 친경쟁적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상품 및 기업의 수입국 시장 접근에 장애가 된다면 수입국 경쟁정책 당국이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규제 방안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경쟁 제한 여부 판단은 해당 기업의 시장 입지, 시장 구조, 수직 협정 기간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수평 협정 : 수평 협정은 당연 위법이 적용되는 重核카르텔(hard core cartel)과 합리 원칙이 적용되는 카르텔, 그리고 정책당국의 관할권 문제를 야기시키는 수출 카르텔로 구분한다. 가격 제한, 생산량 제한, 시장 분할, 고객 분할, 談合入札 등의 중

핵 카르텔은 현재 모든 국가들에서 당연 위법사항으로 금지 대상에 분류하고 있으나 공동연구 개발, 공동 구매, 합작 투자, 標準公有 등의 협정은 그 자체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合理原則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수출 기업들이 판매량 등에 관하여 협정을 맺는 수출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수출국의 경쟁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합리원칙이 적용되는 카르텔에 대하여 통상 당국자들은 경쟁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국제적인 수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수출 카르텔의 규제 방안으로서 세계총후생(global welfare) 개념 하에서의 경쟁 촉진적 수출 협정이라는 요건 충족이 미비될 경우 법 적용 면제를 철회하는 방안과 수출국 관할권 밖에서 영향이 발생되는 관계로 당시국인 수입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한하여 신속히 협력해 줄 수 있는 법적 메카니즘 구축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완된 법집행으로 반경쟁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정금 인상, 형사 처벌 강화, 손해배상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독점규제법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3) 유통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규제 : 허가 제도, 자격 제도 등에 관한 규정이 외국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 발생 여부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 독점 지배력 남용 : 독점기업, 특히 공기업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시장에서 외국 상품과 기업의 접근을 제약하는지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다.

(5) 국제적 기업 인수 합병 : 합병 관련 국가들의 심사 절차와 사전 신고 제도에 관한 국가간 제도 차이로 국제간의 기업 합병시 야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모색중이다.

(6) 덤핑과 반덤핑 조치 : 공정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취지의 반덤핑 조치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국내 경쟁을 제한하고 자국기업 보호위주로 운영되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함께 종종 국제간의 통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국의 반덤핑 조치가 경쟁 촉진과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과 수출국의 자국 기업 덤핑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7) 기업간 국제 협정 :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국제간 협정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교역량을 조절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경쟁위원회는 이밖에도 '특허 및 라이센스 계약의 경쟁법 및 정책 적용에 관한 이사회 권고' 등의 내용을 공포한 바 있으며 지난 92년에는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에 대한 보고서

를 작성하여 수출 및 수입 카르텔이 국제 또는 국내의 경쟁, 국제 무역, 그리고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등의 경쟁 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2. APEC의 경쟁 정책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는 공식적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회원국의 하나인 미국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양자간 협의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저명인사 그룹(Eminent persons group)의 APEC비전 보고서에서 경쟁 정책에 관한 협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다양한 회원국들의 특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성과를 거두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EU의 경쟁 정책

로마조약에 의거 유럽연합(EU)은 기업간의 합의 또는 독점력의 남용,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역내 무역장벽을 없애고 경쟁 체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공동의 경쟁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경쟁 정책의 집행 기관으로서 이해 관계 당사자의 제소에 의해 반경쟁적 행위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행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유럽 법원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1) 카르텔규정(로마조약 제85조) : 회원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주거나 공동시장 내의 경쟁을 저해, 제한, 또는 왜곡시키는 목적 내지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의 합의, 사업자 단체에 의한 결정 또는 협조 행위를 금지하고, 이같은 합의나 결정을 무효로 한다.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로마조약 제86조) : 공동 시장 전체나 많은 부분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나 그 지위의 남용이 회원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 정부 보조금 규정(로마조약 제92조) : 특정 기업의 생산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왜곡시키거나 시킬 우려가 있는 회원국의 정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다.

(4) 기타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결합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특히 역외국들의 다국적 기업에 의한 시장 지배를 규제하기 위해 '기업 결합 규제 규정'을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4. NAFTA의 경쟁 정책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집행위원회가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하는 '무역 및 경쟁에 관한 실무위원회'를 통해 수렴하는 정책 권고 사항과 함께 이미 협정문 내용에 반영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통해 경쟁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 속에는 회원국 별로 반경쟁적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쟁 규범의 채택 및 유지 의무 부여와 함께 효율적인 경쟁법 시행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 의무를 포함하는 제 1501조의 경쟁법규정, 독점기업의 운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반경쟁적 행위를 제한하는 제 1502조의 독점기업 규정 및 국영 기업규정(제 1503조)을 통해 회원국의 투자나 재화 및 용역 거래에 있어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IV. 양자간 경쟁 규범

양자간 협의는 다양한 경로로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교역 상대국의 경쟁 제한 요소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경쟁법을 자국 이외 지역에서의 외국 기업 행위에 까지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일본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양자간의 논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1. 미국-일본

미국은 현재 진행중인 양국간의 '包括經濟協議'를 통해 장기적인 목표로 일본의 독점 금지법 운영 체계를 강화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미국-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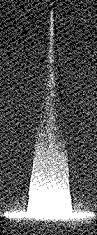
영업 환경 개선방안(President Economic Initiative) 등을 통해 ① 외자도입 절차상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 심사제 및 기술 도입 계약의 사전심사 등 공정 거래법상 국제 계약 신고제 폐지 ② 국제 계약에 대한 별도 규제 기준 폐지 및 규제 기준의 국제화 ③ 양국 경쟁 정책 담당자간의 협의 요구가 있었다.

V. 경쟁 정책 국제화 이슈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 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다자간, 권역간, 양자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협력 형태에 있어서도 EU의 '공동 경쟁정책 추진형' UN의 '경쟁정책 Code 마련형' OECD의 '선언문 내지 권고문 형태'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협력 형태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쟁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WTO와 같은 구속력 있는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협력 형태로의 이행 압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정거래법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결합과 산업 합리화, 연구기술 개발, 불황 극복, 산업구조 조



한국백화점협회에서는
월간 유통저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유통저널은
유통에 대해 알고 싶고
유통을 성공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분석적인 유통안의 설치입니다.

유통저널은
전국의 유명서점이나 정기구독을 통해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월간

유통저널

투고 및 정기구독 문의

((02) 754-6054 / FAX. (02) 776-9528

서울시 종로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빌딩 615호